

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- 가. 발 의 자: 김호진 의원
- 나. 의안번호: 제1972호
- 다. 발의일자: 2020. 10. 16.
- 라. 회부일자: 2020. 10. 26.

2. 제 안 사 유

-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고민과 관심이 높아지고, 대기질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민의 권리와 협조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 요 내 용

- 가.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시책 수립에 시민 참여 권리 및 협조 신설(안 제4조).

4. 참 고 사 항

- 가. 관계법령: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: 신·구조문 대비표

5. 검토 의견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 권리와 협조 사항을 규정하여,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안 제4조와 같이 시민의 권리와 협조 사항을 별도 규정하는 것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주체인 시민의 참여 확대는 물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다만, 안 제4조의 제목인 ‘시민의 권리와 협조’는 ‘시민의 권리와 의무’로, 제4조제3항의 ‘시민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에 노력하고’는 ‘시민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’로 수정하는 것이 문맥상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.